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36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박충권 · 조은희 · 권영진

김기웅 • 권성동 • 김선교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,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,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,536억원으로 22.6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.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

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,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 중 "제50조제1항"을 "제50조제1항 · 제2항"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"를 "제1항제1호·제2호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"를 "제1항제1호 제2호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"로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48조제1항,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
- 2.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

제56조 본문 중 "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"를 "제50조제1항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·제6호,"로 한다.

제57조 중 "제50조제1항제6호"를 "제50조제2항제6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49조의2(포상금 지급) 마사회장	제49조의2(포상금 지급)	
은 <u>제50조제1항</u> , 제51조제1호·	<u>제50조제1항ㆍ제2항</u>	
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		
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		
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,		
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		
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		
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		
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	
제50조(벌칙) <u><신 설></u>	제5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
	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	
	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	
	의 벌금에 처한다.	
	1. 제48조제1항, 제2항 또는 같	
	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	
	<u>자</u>	
	2.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	
	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	
	<u>방조한 자</u>	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u>②</u>	
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		
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		

에 처한다.

- 1. 제48조제1항, 제2항 또는 같 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
- 2.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| <삭 제>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
- 3. ~ 6. (생략)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.
- 제56조(몰수・추징) 제50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. 다만,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 (追徵)한다.
- 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

٠,1	21.5

- 3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③ 제1항제1호·제2호와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-----
- ④ 제1항제1호·제2호와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-----
- 제56조(몰수・추징) 제50조제1항 제1호ㆍ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 3호 · 제6호,-----

제57조(자격정지의 병과) 제50조 제57조(자격정지의 병과) 제50조 제2항제6호-----

할	수 있다.		
	수 있다.		